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상훈
유상범 · 이현승 · 구자근
최수진 · 최보윤 · 김예지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후보자(예비후보자 포함)는 예비후보자홍보물, 예비후보자공약집,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,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, 후보자(예비후보자 포함)가 예비후보자홍보물,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의2 신설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2(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의 제한)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가 예비후보자홍보물, 예비후보자공약집, 선거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.

제261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67조의2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7조의2(선거운동을 위한 홍보</u> <u>물의 제한) 후보자(예비후보자</u> <u>를 포함한다)가 예비후보자홍</u> <u>보물, 예비후보자공약집, 선거</u> <u>벽보,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 등</u> <u>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</u> <u>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</u> <u>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</u> <u>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</u> <u>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적</u> <u>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</u> <u>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생 략)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67조의2를 위반하여 선 <u>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</u>

4. ~ 6. (생략) ⑧ ~ ⑫ (생략)	<u>의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한 자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⑧ ~ ⑫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